

도시계획시설 변경(공공공지 ⇒공원)결정을
위한 의견청취의견 검토보고서

2008년 9월 1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한 두 호

도시계획시설 변경(공공공지⇒공원)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도시계획시설 변경(공공공지⇒공원)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08년 8월 22일(金), 마포구청장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08년 8월 25일(月)

4. 관련법령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08.3.28 법률 제9071호)
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제5항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08.7.28 대통령령 제20941호)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제7항

5. 검토의견

- 본 대상지는 양화진공원(합정동139-21)외 5개소 10,794㎡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현황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고자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- 추진경위를 보면 본 건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곳으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을 2008.1.31 ~ 2.14까지 열람하였으나, 접수된 의견은 없음.
- 주요 변경 입안내용은 본대상지는 마을마당 및 소규모 공원이 조성된 현황이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상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보면 “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한다” 라고 규정되어 있고,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을 보면 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에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곳에 쾌적한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업무편람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.